##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 대안」 관련 토론요지

길 병 옥 교수 (충남대학교)

- 1. 먼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기 본적인 논의에 많은 부분 공감과 동의를 가지고 있고 주민자치의 활성화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에 감사함.
- 2. 주민자치 유형과 장단점 분석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특히 통합형(읍·면·동 사무에 대한 협의·심의 및 의결기구), 협력형(읍·면·동 사무에 대한 협의·심의 기구), 주민조직형(주민자치회 사무에 대한 의결 및 집행기구)에 대한 구분과 주민 자치회 모델(안)이 의미 있게 제시되었다고 판단됨.

구분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모델(안)
법적근거	시・군・구 조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법률(가칭)
위촉권자	읍・면・동장	시・군・구청장
대표성	지역 유지 중심, 대표성 미약	주민대표성, 전문성 확보
위상 및 기능	읍·면·동 행정 자문기구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심의)	주민자치를 위한 협의·심의 및 의결기구 (주민화합, 지역발전, 위탁사무 처리)
설치구역	읍・면・동 단위 1개	읍・면・동 단위 1개(분회 가능)
교육훈련	근거조항 없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연수기회 제공할 의무(법으로 규정)
연합회	법적근거는 없으나, 기초 또는 광역 단위로 자율 구성	시・군・구 단위 임의단체

- 3. 다만 선진국 또한 주민자치회 관련 제도적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그리고 주민자치의 내용과 범위, 권한 및 역할, 책임성과 대표성, 전문성, 예산, 전문인력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기에 한국 고유의 토착화되고 성숙된 주민자치의 모델과 제도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됨.
- 4.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선진국들은 마을공청회(Town Meeting) 또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오는 부적합성에 대비하여 작은 규모의 일원 또는 단일 민주주의(Unitary Democracy)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의 대안사회(Alternative

Society)라는 개념을 적용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어느 정도 가능한지 시범적용과 지속적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봄.

- 5. 선진국들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에서 이익집단 정치(Interest-Group Politics)로의 전환 그리고 기업자유주의사회(Corporate-Liberal Society)라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대안이 지역의 주민자치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6.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모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구조의 빈익빈/부익부 현상, 님비(NIMBY)와 핌피(PIMFY)현상,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의 증가, 절차적 정당성의 약화 등 다양한 사회적 모순에 대안 대안설정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7. 그동안 논의가 전개되어 온 거버넌스(Governance) 논리의 적용과 문제점, 경제사회문화 등의 구조적 복잡성, 케오스(Chaos) 현상, 극단적 이기주의, 폐쇄적 지역 또는 집단주의 등에 대한 대안설정이 주민자치에서 가능한지도 고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 8. 분쟁발생시 주민자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우리나라도 선 진국과 같은 대안적 갈등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을 통해 분쟁의 해결뿐만 아니라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됨 (사회통합위원회 발의, "사회통합 및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법률안" 참조).
- 9.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동의를 표하지만 시·도에서 주민자 치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지원정책은 어떻게 해나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 10. 마지막으로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복지민주주의(Welfare Democracy), 공동체적 민주주의(Communitarian Democracy) 등과 연관하여 주민자치의 귀결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선진국 주민자치의 배경에는 주민자치에 대한 권리와책임, 자유와 권한 등 시민사회문화의 정착, 환경문제와 세금문제 등을 고려한 생태환경 조성 및 경제적 형평성 제고, 사회적 안전망 설치 등과 같은 주민자치의 제도적 성숙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